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2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1월 23일 유호렬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2월 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유호렬 의원

가. 제안이유

- 마포구 홍대 거리 주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·시행하여 마포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물론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3조 ~ 제4조)
-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(안 제5조)
- 업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 (안 제6조 ~ 제7조)
-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-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동(同) 조례안은 2016.11.25.~11.30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, 3년 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며,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거리 예술가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, 거리예술 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거리예술 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마포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향후 마포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
- 우리 구는 지난 7월 1일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진흥과와 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어,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관광사업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필요 시에는 부서별 구분없이 T/F팀을 구성하여 광흥당 전통 혼례식 및 공민왕 사당제 등 전통문화 행사와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,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, 하늘공원 역사품 축제 및 월드컵 경기장 등 마포구에서 가지고 있는 유·무형 문화 자원과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드라마 세팅장이 있는 MBC방송국 등 상암 DMC, K-POP을 이끌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, 홍대 B-BOY 등 역사와 문화,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마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특히 조례 제정이후 문화관광 관련부서에서는 먼저 홍대주변, 상암 DMC 거리 및 경의선 책거리 등 마포구 거리에서 공연을

할 수 있는 장소와 거리예술인이 선호하는 공연장소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거리예술인이 선호하는 환경조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- 관광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마포구 거리예술인에게 공연할 수 있는 거리가 많고, 공연하기 쉽도록, 공연 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 등 대책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규칙으로 정함은 물론 마포구 거리예술인이 마포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마포구 이외의 거리예술인들까지 마포구를 거리예술인들의 메카로 삼고 한번 마포구 거리에서 공연을 했던 거리예술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마포구가 거리예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마포구 거리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예술 활동하기 좋고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 알릴 수 있도록 마포IPTV, 전광판(공덕동, 합정동 로터리), 지역신문 및 내고장 마포 등에 적극 홍보 하여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